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

의 안 번 호

제안연월일: 2002. 2

제 안 자:정치개혁특별위원장

1. 제안경위

가. 2002년 1월 23일 제226회국회(임시회)폐회중 제1차위원회에 서 정당관계법심사소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함.

나. 2002년 2월25일 제227회국회(임시회) 제3차위원회에서 소위 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바 위원회안으로 채택키로 가결함.

2. 제안이유

공직선거에 있어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는 국가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고보조금의 관리 및 사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감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」을 법률로 규정하되, 보조금의 감액지급 요건을 일부 조정하는 등 정치자금제도를 일부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 금을 추가로 지급함(안 제17조의2, 신설).
- 나.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보조금 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로 한 때에는 허위보고한 금액의 2 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 1호).
- 다.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2호).
- 라.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보조금총액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호, 신설).
- 마.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, 시·도지부 및 지구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지급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0조제4호, 신설)

법률 제 호

政治資金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

政治資金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2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) ①국가는 정당법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로 인한 시·도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 계상한다.

②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·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에 따라,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율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1월이내에 지급한다.

제19조제2항중 "補助金"을 "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補助金"으로 하고,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各級選舉管理委員會(投票區選舉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)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 받은 政黨 및 이의 지출을 받은

者,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助金 지출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다.

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第20條(補助金의 減額) 中央選擧管理委員會는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回收하고 回收가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政黨에 지급할 補助金에서 減額하여지급할 수 있다.
 - 1.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받은 정당이 補助金에 관한 會計報告를 허위로 한 때에는 虛僞報告한 금액의 2倍에 상 당하는 금액
 - 2.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외의 用途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用途를 위반하여 사용한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
 - 3.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第19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用途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補助金總額의 100分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
 - 4.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報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央 黨의 경우 지급한 補助金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, 市·道支 部 및 地區黨의 경우 中央黨으로부터 지원받은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7조의2(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
	금)①국가는 정당법 제31조제6항의
	규정에 의한 보조금으로 최근 실시
	한 국회의원총선거의 선거권자 총
	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
	료로 인한 시 · 도의회의원선거
	가 있는 年度에 計上한다.
	②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・
	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
	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
	정당에 대하여 공직후보자 여성
	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
	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
	율에 따라,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
	한 국회의원총선거의 득표율의 비
	율에 따라 배분·지급한다 <u>.</u>
	③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
	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
	1월 이내에 지급한다.

- 第19條(補助金의 用途制限号) ① (생 략)
 -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 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은 지급 받은 補助金 總額의 100分의 20이상을 第1項第5號의 用涂에 사용하여야 한다

③ (생 략)

④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第18條 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 급 받은 政黨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 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 여 補助金이 支出되는지를 調 査・확인할 수 있다.

減額)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 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政黨에 대한 補助金의 지급을 中斷하거나 그 一部를 減額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第19條(補助金의 用途制限令)	\bigcirc
(現行과 같음)		
2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
·第17條第1項의 規定에	의	한

③ (現行과 같음)

4)各級選舉管理委員會(投票區選 擧管理委員會를 제외한다)는 第 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 및 이의 支出을 받은 者,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監督상 또는 이 法에의 위반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補助金 支出에 관하여 調査할 수 있다.

第20條(補助金의 지급中斷 또는 第20條(補助金의 減額) 中央選舉 管理委員會는 補助金을 지급받은 政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 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回收하고 回收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政黨에 지급할 補助金에서 減額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1. 第1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補 助金을 사용하거나 經理한 때

2. 정당한 事由없이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보고를 한 때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- 1.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助金을 지급받은 정당이 補助金에 관한 會計報告를 허위로 한 때에는 虛僞報告한 금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
- 2.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외의 用途로 사용한 경우 에는 그 用途를 위반하여 사 용한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 는 금액
- 3.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第19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用途로 사용한 금액이 지급받은 補助金總額의 100分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
- 4.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會計報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中央黨의 경우 지급한 補助金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, 市·道支部 및 地區黨의 경우 中央黨으로부터 지원받은 補助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